

2026년 가나안주간보호센터의 운영규정

제 1조 【목적】

노인복지법과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주야간보호시설(가나안주간보호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 2조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정원은 규정된 정원에 따라 운영하여 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
 - 수급자 일평균 이용인원은 2024년 2월 5일부터 기존 49인에서 정원이 79인으로 변경되어 일평균 이용인원을 79인으로 한다.
2. 이용대상은 사업계획서에 정한 바에 따라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 1) 장기요양급여수급자(1~6등급)
 - 2)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보호가 필요한 자
3. 모집방법
 - 지자체의 추천 및 자체 홍보(인터넷 홈페이지 <http://cafe.naver.com/ganaan6872>, 현수막)로 모집한다.

제 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급여등급을 가진 자가 이용 당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까지 하되, 계약자의 해지 의사가 없을시 계약기간은 자동연장 되도록 한다. 또한,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서비스 제공자는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계약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이후 15일 이내에 시설에 회신하여야 한다. 계약만료 전까지 계약자의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 연장 된다. (단, 시설 이용 정원이나 계약자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③ 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④ 계약자가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는 수급자의 심신이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하도록 최선의 요양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자(보호자)가 납부한 비용수납액 등을 성실히 집행하는 것을 계약의 목적으로 한다. 계약자(보호자)는 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지불하여야 하며, 계약이 정한 각 조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정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2026년 재가급여(주간보호) 장기요양급여비용(2025.01.01.기준)

구	분	월 이 용 료 내 역				비 고
월이용 보험료	1등급	69,730원 x 25일 + 90,650 x 1일 = 1,833,900				총 이용 일수 26일 기준
	2등급	64,590원 x 25일 + 83,970 x 1일 = 1,698,720				
	3등급	59,640원 x 25일 + 77,530 x 1일 = 1,568,530				
	4등급	58,010원 x 25일 + 75,410 x 1일 = 1,525,660				
	5등급	56,360원 x 25일 + 73,270 x 1일 = 1,482,270				
	인지지원등급	56,360원 x 12일 = 676,320				
①보험료 (본인부 담금)	등급	총액	15%	9%	6%	
	1등급	1,833,900	275,090	165,050	110,030	
	2등급	1,698,720	254,810	152,880	101,920	
	3등급	1,568,530	235,280	141,170	94,110	
	4등급	1,525,660	228,850	137,310	91,540	
	5등급	1,482,270	222,340	133,400	88,940	
	인지지원등급	676,320	101,450	60,870	40,580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면 제				
②비급여 항목	식재료비 총 식비	1일 2식: 4,000 x 26 = 104,000원 1일 3식: 6,000 x 26 = 156,000원				1식 2,000원
	이미용비	본인부담				
③ 기타 항목		진료약제비 등 기타비용 본인부담				
총 계 (①+②)		1등급	275,090	104,000	379,090	일반 15%
		2등급	254,810	104,000	358,810	
		3등급	235,280	104,000	339,280	
		4등급	228,850	104,000	332,850	
		5등급	222,340	104,000	326,340	
		인지지원등급	101,450	48,000	149,450	
		1등급	165,050	104,000	269,050	감경 9%
		2등급	152,880	104,000	256,880	
		3등급	141,170	104,000	245,170	
		4등급	137,310	104,000	241,310	
		5등급	133,400	104,000	237,400	
		인지지원등급	60,870	48,000	108,870	
		1등급	110,030	104,000	214,030	감경 6%
		2등급	101,920	104,000	205,920	
		3등급	94,110	104,000	198,110	
		4등급	91,540	104,000	195,540	
		5등급	88,940	104,000	192,940	
		인지지원등급	40,580	48,000	88,580	

(1) 기본원칙: 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1식 2,000원), 이·미용비이며, 실제 소요비용만을 산정해야 함.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2) 세부기준

- 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 이·미용비 :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3) 비급여 비용 외 실비 수납기준은 아래와 같다.

- (1) 기본원칙 :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① 수급자가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제공 받고 있는지, 표준이용계획서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지 확인 할 권리
- ② 계약자는 시설에서 실시하는 가족간담회 등을 통하여 정보를 교류하고, 서비스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정보 및 자료제공 의무
-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④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사전 통보 및 대리인 선정 의무
- ⑤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5. 계약의 해제 등에 관한 사항

1) 계약자의 해제

계약자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서비스 제공자의 해제

서비스 제공자의 수급자에 대한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타수급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계약자가 입소비용을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서비스 제공자가 계약

자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나서 계약자가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수급자가 10일 이상 입원하였을 때 해제할 수 있다.